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5. 2. 13.(목) 10:00

#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71호
- 나. 제 출 자 : 고성미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. 23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. 23.

## 2. 제안이유

입양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입양부모를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하고, 입양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함 (안 제2조).
- 나.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이 출생아동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, 제10조
  - 2)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조, 제21조
  - 3) 「입양특례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입양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양육에 필요한 지원이 현행 제도에 맞게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입양부모를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하고, 입양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함 (안 제2조).
- 2)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이 출생아동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
### 다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입양아동 및 가정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따라 출생 양육에 필요한 지원이 보편·타당하게 이루어지고 복지서비스 전달에 실질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24. 4. 24.] [법률 제20112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**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2. 5. 2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5. 23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, 2023. 12. 26.>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(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·금액·방법, 이용기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12. 14., 2023. 12. 26.>

## 건강가정기본법

[시행 2024. 9. 27.] [법률 제20417호, 2024. 3. 26., 타법개정]

**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해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·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10. 17.>

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입양특례법

[시행 2024. 1. 23.] [법률 제20108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**제3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,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3.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
4.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
5.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
6.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